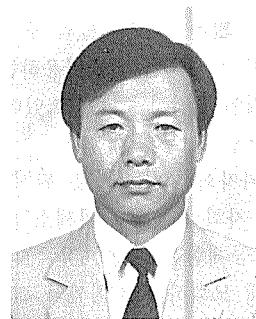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I)



황 의 창  
특허청 상표심사과장

- 목 차 -

1. 머리말

- 1. 영업비밀의 개념
- 2. 영업비밀 침해 동향
- 3. 영업비밀 관리실태

2. 영업비밀의 국제 규범

3. 주요 선진국의 영업비밀 보호  
법제

- 1. 한 국
- 2. 미 국
- 3. 독 일
- 4. 일 본
- 5. 영 국
- 6. 스위스
- 7. 프랑스

4. 맺음 말

1. 머리말

영업비밀은 막대한 투자와 많은 지적창작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도 상품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자원과 결합한 경우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경영자원이 된다.

영업비밀이 돈과 결합하면 재테크가 되고 기술과 결합하면 하이테크가 되어 일찍이 지적재산으로서

의 보호가치가 매우 큰것으로 평가되어 19세기 초부터 영·미를 중심으로 한 구미에서 발달되어 왔으나 특히 최근에 와서 그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있다.

이는 80년대의 탈냉전의 선언과 기술전쟁의 예고가 산업정보 중심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형의 제시와 경제질서의 재편을 예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3년 12월 15일부터 UR Trips 협상 타결로 나타난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국제규범의 마련과 함께 1995년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국제교역의 증대와 이에 따른 국제분쟁 또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비밀 관리에 높은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냉전이후의 경제판도가 누가 먼저 최고의 상품기술을 장악하고 누가 가장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짜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전쟁의 승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영업비밀을 자본·노동·시장 등과 함께 경영 4대요소

로 꼽고 산업첩보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바야흐로 스파이전이 군사외교 전선에서 산업경제 전선으로 옮겨붙고 있어 세계경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중화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 그리고 판매의 노하우로 무장한 기업들이다.

유럽의 진동(Euroquake)이란 화제작을 쓴 대니얼 번스타인은 「자본주의 끼리의 전투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군대가 되고 있다.

기업간부들은 어느면에서 대통령이나 수상들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스파이전도 소련의 탱크 디자인 보다는 경쟁기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새로운 전쟁에서 기업종사자들의 교육수준과 숙련도, 기업사명에 대한 충성심은 과거 군사전쟁에서 군인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코네티컷주에서 보안상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리처드 해퍼너」씨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전체기업의 49%가 산

업정보의 도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미국의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985년 이후 미국의 산업정보 유출사고 건수는 한달 기준으로 260%라는 어마어마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 지난 1992년 미산업안전협회(ASIS)가 항공, 컴퓨터, 전기 등 각 분야 5천 여개 회사가 가입돼 있는 회원을 상대로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246개사가 589건의 사건을 보고 했었으며 이 중 32개 대형 회사가 입은 피해액만 해도 1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85년부터 1988년 기간중 외국정부나 회사가 관련된 사건은 21%에 불과했으나 1992년에는 외국관련 산업스파이 사건이 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국기업들이 사건을 당했다고 보고한 장소는 미국 국내를 비롯한 북미가 79%였으며 나머지 21%는 서유럽, 일본, 아태지역 등이 다.

또 미국기업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인 주체는 자기회사 직원이 30%, 회사다니다 떠난 사람이 28%로 많은 부분을 차지 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라이벌 미국회사 20%, 외국정부 18%, 회사자문역 15%, 돈을 노린 산업스파이 9%, 외국기업 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회사 전·현직 종업원에 의한 유출이 전 유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산업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고객명단 16%, 가격산정자료 11%, 제품생산 8%, 기본조사 8%, 판매자료 7%, 제조공정자료 6%, 인력관리자료 6%, 보상자료 5%,

원가자료 5%, 사원들의 제안 5%, 전략계획 4%, 기타 19% 등이다.

또 이들 산업스파이가 정보를 빼내는 방법은 절도, 무허가 복사, 주거침입, 불법 통신 포착, 전자도청, 뇌물 공여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필자가 특허전담부서 설치업체 100대 기업을 업종별로 고루 선정하여 영업비밀 유출주체에 대한 전화상담을 해 본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종업원 단독 유출보다는 그룹형태의 조직적 유출이, 기업내부인의 단독유출보다 외국인과의 공모에 의한 공동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고 또 회사중사자들의 유출도 일반직원에 의한 유출보다 이사급 이상의 임원인 관리층 내지는 경영층에 의한 유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제 영업비밀보호는 나라안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역상의 계약관계 등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나라 안팎에서 영업비밀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나 상대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무지로 제소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물론 그 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요선진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를 소개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국제간의 분쟁을 예방함과 아울러 적절한 보호를 통한 기술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경쟁원리

를 통한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경영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영업비밀의 법적보호에 관한 기본관점을 같이하고 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적구제의 실질을 구한다는 접근방법은 완전히 공통된다.

따라서 각국은 제정법이든 판례법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미국과 같이 민사적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독일과 같이 형사적 구제에 중점을 둔 나라도 있다.

또, 제정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는 나라중에서도 미국의 통일 트레이드 시크리드법과 같이 영업비밀에 관한 독립법을 특별히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프랑스와 같이 민법, 형법 등과 같은 일반법에 의하여 보호한 나라가 있고 독일이나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넣어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확대되어 온 경향이다.

영업비밀보호제도 초기에는 생산기술에 관한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하여 오다가 점차 판매·기타 경영에 관한 정보까지도 영업비밀로 확대하여 오늘날 영업비밀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기술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까지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고 그 정보의 명칭도 나라에 따라서는 영업비밀, 기업비밀, 재산

적 정보, 비공개 정보, 산업정보, 노하우, 트레이드 시크리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으나 이는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 1) 영업비밀의 개념

기업 등 사업주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기술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영업 등 경영상의 정보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총칭적 개념으로서 일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제정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명 재산적 정보, 산업비결, 기업기밀, 비공개 정보, 트레이드 시크리트(Trade Secret), 노하우(Know-how), 비밀영업정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으나 이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의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비밀유지성, 유용성)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영업비밀로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정보로서 연구·개발 전략 및 그 방법,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일지, 실험성과 분석자료, 실패한 실험데이터 포함한 실험데이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실패한 실험데이터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의 점이다. 실패한 자료임으로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실패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

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실패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고속 개발을 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결과가 되고 보유자의 입장에서 이 영업비밀로 활용함으로써 같은 실패를 피할 수 있어 연구개발이나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고 동일 또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술상의 정보로서는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생산기술,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성분원료의 배합비 등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의 향을 내는 비법이다. 코카콜라는 세계인이 널리 마시는 음료수이다.

그 원액의 성분이나 배합은 대표적인 영업비밀이다.

이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 코카콜라 용기에는 성분으로 물·설탕·인산·카페인 등 외에 천연향료가 표시되어 있지만 향료의 종류와 성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향료의 성분과 그 조합법은 극비로서 은행금고에 엄중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하며 이것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업비밀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최근 코카인의 마취성이 문제가 되어 코카콜라는 원료인 코카에서 추출되는 액체를 사용하지만 코카인은 20세기 초경에 금지하고 있고 원료인 코카는 주로 페루국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 등 영업비밀의 일부를 공개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상업상의 정보로서 고객의 리스트, 고객의 관리방법, 거래선의 루트, 가격산정 자료, 판매 매뉴얼, 제품의 할인시스템 등을 들어볼 수 있고 기타 경영상의 정보로는 기본조사자료, 경영관리 기법,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사업성 검토자료, 비공개 사업계획, 설비투자계획, 선전광고의 방법,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기법 등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교전, 공해물질의 방출정보, 세금포탈사실 정보, 공익적 보도자료 등은 아무리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법적요건에 의한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 2) 영업비밀 침해동향

최근 치열한 산업정보전이 전개되면서 놀라운 사실은 선진국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 정부의 묵인 내지는 개입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첨단무기 노하우를 둘러싼 미·불 간의 미묘한 마찰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 첩보기관이 1993년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파리에서 개막되는 에어쇼에 출품할 예정이던 미 주요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스파이 짓을 해왔다고 미언론이 보도하면서 이 쇼에 참가할 휴즈사가 첨단 노하우를 도난당할 것으로 우려해 전격 불참을 선언 하였다.

휴즈사 불참의 주요 이유는 프랑스 첩보기관이 자사의 첨단 노하우를 훔치려 하니 조심하라는 권고를 미 CIA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지피스사는 모든 국가가 이제 경제 첩보전에 돌입해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프랑스가 그렇다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이보다 훨씬 더한 짓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영업비밀 탐지의 유형은 매수 등에 의한 부정 스카우트, 뇌물공여, 합법을 가장한 인체탐색(search)을 위한 「헤드헌터」업 운영, 불법 통신포착, 전자도청, 고객 또는 방문객 가장, 시찰단원위장, 위장취업, 공중촬영, 보도요원 가장, 주거침입, 절취, 기망, 협박, 무허가 복사, 심지어는 미인계, 위장 결혼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탐지의 주체도 일반적으로 정보기관 단독(위장기업설치, 운영), 관련기관과의 제휴, 다국적 기업과의 활동, 현지법인 설립(퇴역기술자의 채용), 주재상사요원과의 합작 또는 위탁 등에 의해 탐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주요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백악관, CIA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요국의 산업정보를 수집,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실례로서, CIA가 말레이시아의 공공국제입찰 경쟁에서 일본기업의 응찰가격과 정부의 방침 등에 관한 도청정보를 토대로 부시 행정부가 사전개입하여 미국기업을 참여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일이 있다.

프랑스가 국영항공 에어프랑스 1등칸 좌석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외국기업 간부들의 대화를 도청하는 일은 물론 객실 승무원으로 가장

한 정보요원들이 대서양 노선의 미국 기업간부들의 대화를 엿듣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에어프랑스 항공기들은 군용정찰 카메라를 장착하여 외국의 산업시설들을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에어프랑스가 정규항로를 이탈하여 독일의 화학공업단지를 촬영한 일도 있다고 한다.

또 파리 니콜호텔 등 프랑스의 주요 호텔의 종업원이 외국기업간부들의 방에서 기밀서류를 뒤지거나 플로피 디스크를 복사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91년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일어난 휴스턴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 직원이 미국기업의 기술정보와 판매전략을 알아내기 위하여 컴퓨터 회사 사장 집의 쓰레기통을 뒤진 사건이나 정부기관 요원에 의해 출장 온 외국기업 직원들의 회사 영업비밀 문서가 든 가방의 탈취 사건의 증가, 현지지점과 본사간의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통화를 도청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또한 BND(독일연방정보국)이 독일을 여행하는 외국기업가들의 전화통화를 고정적으로 도청하고 있고 심지어는 BND 정보요원이 보스턴소재 생명공학기업에 근무하는 여자 직원을 결혼을 미끼로 유인하여 첨단정보를 빼내 달아난 사건도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구소련도 KGB가 프랑스의 공대공 미사일의 자유유도장치에 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인계를 썼던 일이나 일본이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미국에서 경제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야자와 기이치 일

본총리도 과거에 정보수집 활동에 관여 했었다고 최근 출판된 미국작가 슈바이저 저서가 폭로 했다.

특히 일본 방위청은 이사가키도에 안테나를 설치해 놓고 한국기업 등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이 책은 전하고 있다.

따라서 미 CIA 제임스울시 국장은 우호국에 의한 경제스파이 활동에 보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저서는 CIA의 1987년 비밀조사보고를 인용해 「일본 정보예산의 80%가 미국과 서유럽으로 부터 경제정보의 수집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 통상성과 일본무역 진흥회(JETRO) 등 정부 관련기관은 물론 미쓰비시(三菱), 히타치(日立), 마쓰시타(松下) 등 다국적기업이 정부와 제휴하고 있는 점이 일본의 정보수집 활동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 저서에 의하면 일본의 경제정보의 수집 활동은 옛날부터 활발했다.

그 예로서 미야자와 총리는 50년대 대장성 근무당시 일본정부 고위관리와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정보요원이 미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도쿄로 가지고 들어오는 운반책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 미야자와총리는 참의원 의원 시절인 61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 철강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온 일본의 상사 직원 여러명을 만났다고 한다.

방위청의 통신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육상막료감부 조사 제2과 별실은 본래의 업무인 구 소련과 중국, 북한의 군사교신 이외에도 「이

시카키섬」에 설치한 안테나를 통해 한국과 대만 기업의 전화를 수신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여러차례 일본 측에 불만을 표명해 왔다.

이상과 같이 경쟁국의 산업정보 수집에 혈안이 되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부정경쟁의 원천이 되고 있다.

### 3) 영업비밀 관리실태

영업비밀의 관리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카터필라」같은 회사는 모든 해외와의 교신을 암호로 하고 있고 「듀폰」은 전직 FBI의 방첩 책임자를 고용했다고 한다.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같은 재벌은 자그마치 200억 달러를 들여 전세계에 뻗어있는 “계열기업-소비자-공급자”로 연결하는 국제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첨단 컴퓨터 체제로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관리는 비밀정보를 생산, 이용, 관리하고 있는자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 등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적관리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관리 이와 관련한 사물관리 및 장소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관리

첫째,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종업원을 채용전에는 반드시 면접을 통해 인성, 직업관, 기업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업 문화에 적합한 인재의 발굴·채용하고 채용시에는 영업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나 계약서를 특별히 작성하고 있다.

영업비밀 유지계약에는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밀로 지켜야 할 영업비밀을 특정하고 있으며 채용후는 현직 종업원의 고용기간중 겸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그 예로서 종업원이 재직중 경쟁회사나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거나 경쟁업을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퇴직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의 명세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약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약정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며 계약의 일부로 체결되어야 하고 유효한 대가에 의해야 한다.

제한이 부과되는 기간, 지역은 한정하되 합리적이어야 하고 제한을 가하는 직종의 범위는 세분화하여 한정하며 사항적인 제한으로서는 근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이라고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은 양당사자에게 공평해야 하고 공공의 복리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유효한 대가」라 함은 경업금지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제한조치에 의해서 받은 계약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경업금지 기간동안의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적 성

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예를들면 명예수당 또는 기밀수당 등의 지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한 장소」라 함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활동 구역 내”로 해석된다.

둘째, 거래관계자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래관계자 등이라 함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방계회사, 하도급 관계에 있는 회사, 제휴회사, 기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고문, 자문, 기타 조력자와 퇴직 종업원을 말한다.

이들과 거래전에 반드시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혹은 각서 등을 징구하고 거래시에는 즉 계약기간 동안은 전속계약으로 경쟁사업 금지를 의무화 하는 등의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특별약정을 한다.

또는 거래 후에는 일정기간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권 내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셋째, 고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야의 상담 등은 특별히 주의하여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넷째, 제3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제3자의 방문은 공식, 비공식방문을 불문하고 반드시 방문목적, 방문일시, 방문할 장소,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여 점검하고 방문시에는

방문전에 제출한 명단과 대조하고 방문시 지득한 영업비밀은 회사의 승락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나 각서를 징구하고 있다.

또한 방문시 카메라, 카세트 테이프 등 휴대품의 소지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금속탐지기에 의한 몸수색을 한다.

이상과 같은 공식 또는 비공식 방문객 등에 대한 관리 이외에 산업스파이 등 영업비밀 탐지를 목적으로 접근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공장 등 주요시설에 카드시스템에 의한 점검은 물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비디오 장치의 설치 등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탐지자의 영상을 카메라에 잡아 차단하고 경비체제도 아울러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정보관리

영업비밀로 선정한 정보는 일반 정보와 분류하여 관리한다. 영업비밀은 그 중요도에 따라 I급 영업비밀, II급 영업비밀, III급 영업비밀, 사외비 영업비밀, 사내비 영업비밀 등으로 등급을 책정하고 그 활용가치에 따라 5년, 3년, 2년, 1년 6개월 등으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여기에서 I급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II급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III급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영업활동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외비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되는 정보를, 사내비 영업비밀이란 누설되었을 경우 영업비밀 비인가자가

유리하게 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이 분류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영업비밀 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지를 하고 금고나 이중자물쇠 등 특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용기에 보관한다. 영업비밀을 직무상 종업원에게 알리거나 영업상 거래관계자 등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현황을 열람, 복사, 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관리기록부, 영업비밀 열람기록전 및 영업비밀 대출부등을 비치하여 기록, 정리한다. 이와 같은 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적출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영업비밀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비밀관리실태의 점검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장소 관리

영업비밀이 보관되어 있거나 보호를 요하는 연구시설, 생산시설 등이 있는 곳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나누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4) 정보관리체제의 확립

영업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업비밀관리규범을 제정하고 영업비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영업비밀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또한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영업

비밀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5) 기타 관리

이상의 영업비밀 관리방법외에도 고충처리센타의 설치·운영·영업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운영,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의 실시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조치 등 영업비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 영업비밀의 국제규범

그동안 영업비밀은 어떤 통일된 국제규범에 의해서 보호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국경없는 교류시대를 맞고 있는 요즈음의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들이 서로달라 상호보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분위기가 지난 '80년대 말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의약 농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미공개 실험 데이터(임상 실험자료등) 등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를 지적재산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1986년 9월 GATT UR각료 선언문을 통하여 정식제로 채택후 미·일·구의 민간삼국회의 공동문서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지난 1993년 12월 15일 타결을 봄으로서 비로서 영업비밀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정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영업비밀의 최소보호규범의 통일화를 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호를 통한 국제교역의 정상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제 GATT 회원국은 동 협정을 협정발효후 선진국은 1년내 개도국은 5년내에 국내법에 성실하게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하되 회원국의 영업비밀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금번 타결된 UR Trips 협정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그 정보가 비밀이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보호하는 정보로서 이를 부정경쟁차원에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침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에 반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비밀을 사용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로 부터 보호

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는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기타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 절차와 세관 통관유예 조치 허용 등을 인정하고 있는 국경 조치 및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 절차는 물론 분쟁예방과 다자간 분쟁해결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3월호에 계속〉

## 용어해설

### ESN(Electronic Serial Number) 이동국전자일련번호

단말기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한다. 단말기별로 유일하게 할당되는 전기적인 고유번호로서 제작과정에서 지정된 32개의 2진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임의 조작에 의한 불법단말기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한하는 보호장치로서 ESN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단말기의 호처리 는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ESN은 MFR(Manufacturer) Code, Reserved, Serial Number로 구성되어 있다.

1 MFR Code는 단말기 제조시간 ESN Code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미국 FCC(미연방통신위원회)가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Code로 단말기 제조사가 생산을 하고자 할 때 FCC에 요청하여 부여받는 코

드이다.

MFR Code는 미국 FCC에서 전세계 제조업체 간 ESN Codes가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 Serial Number는 제조업체가 단말기 생산시 생산제품의 ESN이 중복되지 않도록 독자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3 Reserved는 FCC가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코드로 제조업체가 기부여받은 MFR Code로 생산된 단말기 수량이 Serial Number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번호가 부여되어 소모된 경우 FCC에서 통보할 경우 Reserved Code를 제조업체에 지정하고 있다.